

영등포구의회
제15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12. 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9. 11. 17.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제정(제안) 이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적용대상 기관을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구에서 출연한 재단 등으로 함(안 제3조)
- 전년도 친환경상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 실적 등을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에 따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구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함(안 제8조)
- 친환경상품의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정함 (안 제10조)
- 친환경상품 구매증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관련법규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추진계획 제출 협조 요청 공문(서울특별시 환경행정담당관-8601, 2009. 5. 8)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양천구, 송파구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 구매·생산 촉진시책 수립,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공표, 구매의무범위, 관련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조례제정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12. 3.

보 고 자 : 이 남 식

【참고자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584호, 2009.4.1, 타법개정]**

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